

# 물환경보전법

---

2018. 10. 15.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목 차

---

1. 법의 전체 구조 및 입법 목적
2.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수변생태구역
4. 점오염원관리
5. 비점오염원관리

## 법의 전체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 입법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1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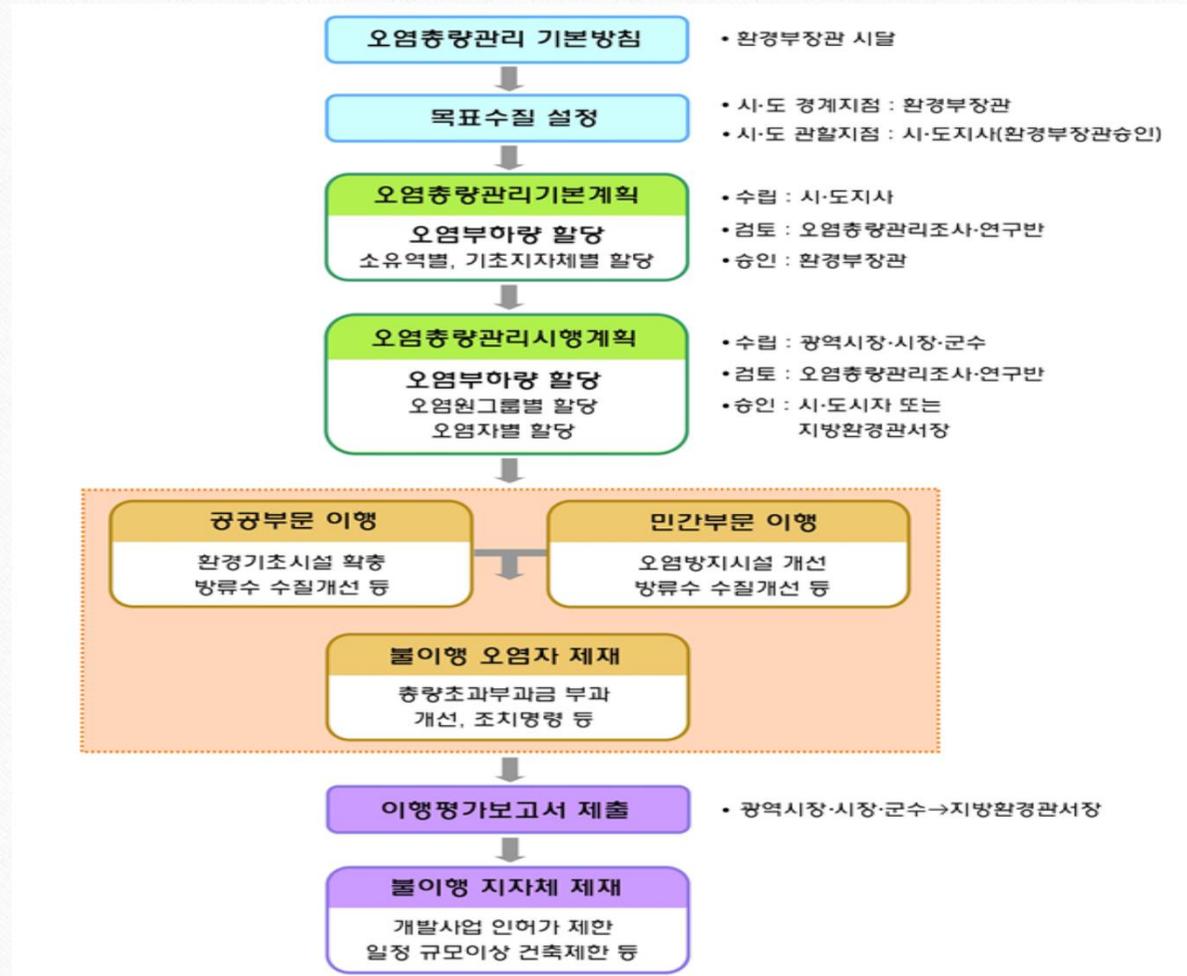
- “물환경”: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 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 고시(10조의2)

**2.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환경부장관은 1. 물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 의의: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제도 (2004년 낙동강에서 시작)

- 오염부하량 관리방법: 하수처리시설 개선+개발사업 인허가 관리를 통해

-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페널티: 불이행 오염자 제재\_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개선, 조치명령 등(4조의6 등); 불이행 지자체\_ 개발사업 인허가와 건축,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제한



**2.2. 수변생태구역** : 환경부장관은 물환경 보전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수변생태구역)을 매수 또는 생태적으로 조성, 관리 (19의3)

- 의의: 하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계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하천의 일정구간을 수변생태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 관리.

- 관리: 이 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입지 제한, 수계기금으로 단계적 매수

- 사례: 수변구역 내 토지 및 건물(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부동산 매수 신청, 피고는 훼손된 지역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신청 거부, 원고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원심: 매수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량, 부동산 소유자는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대법원: 매수제도는 손실보상을 대체하는 성격, 매수 요구할 권리 있음)

**수변생태벨트:** 수변구역 내 식생을 복원. 환경부도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수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 200년 이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 3. 점(點)오염원 관리

생활하수는 하수도법,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이용법 그리고 산업폐수는 이 법으로 관리

## 3.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 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 (mg/L)	화학적 산소요 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3. 2.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은 허가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대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를 제한.~~

### 3.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의무

### 3. 4.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 3. 5.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등

# 석포제련소 사례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위치



- 제43조(과징금 처분등) 행정청은 사업자에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43조).

- 경상북도는 지난 4월 폐수 무단 방류\*를 사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처분(20일).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취소와 과징금 대체를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조업정지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심판 참가 신청으로 심리 연기." 환경단체의 참가신청 인용여부 결정 후 본안절차가 속행될 예정.

\*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폐수처리 시설인 펌프고장으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폐수 70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이 폐수는 방류수에서 불소가 환경허용기준치의 9배, 셀레늄이 2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 경북도는 “폐수가 흘러나갔지만 제련소쪽은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중 폐수 0.5톤을 오염처리시설로 흘러보내지 않고 공장안 토양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9260.html#csidx1b220a23970d184ae502f00d3b27eba>)

### 3. 6. 배출부과금제도

\*참고: 위반업체 현황

---

## 4.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로 미세 타이어 조각, 농경지 잔류 농약 성분, 공사장 분진 따위). 여과 없이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빠른 시간에 수질 오염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 비점오염 물질 발생 추이 및 비점오염 물질 저감시설 중 식생수로(자연형)



-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인공습지’와 ‘식생수로)과 ‘장치형’(여과형과 와류형)으로 구분. 자연형은 처리효율이 안정적, 유지관리 빈도가 낮은 반면 장치형은 시설설치 부지가 적게 소요

---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결과, 2009>

- 자연형 시설이 장치형 시설에 비해 설치비, 운영관리비, 처리효율 등에서 유리
- 장치형 시설 대부분은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처리효율의 편차가 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위치가 처리효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